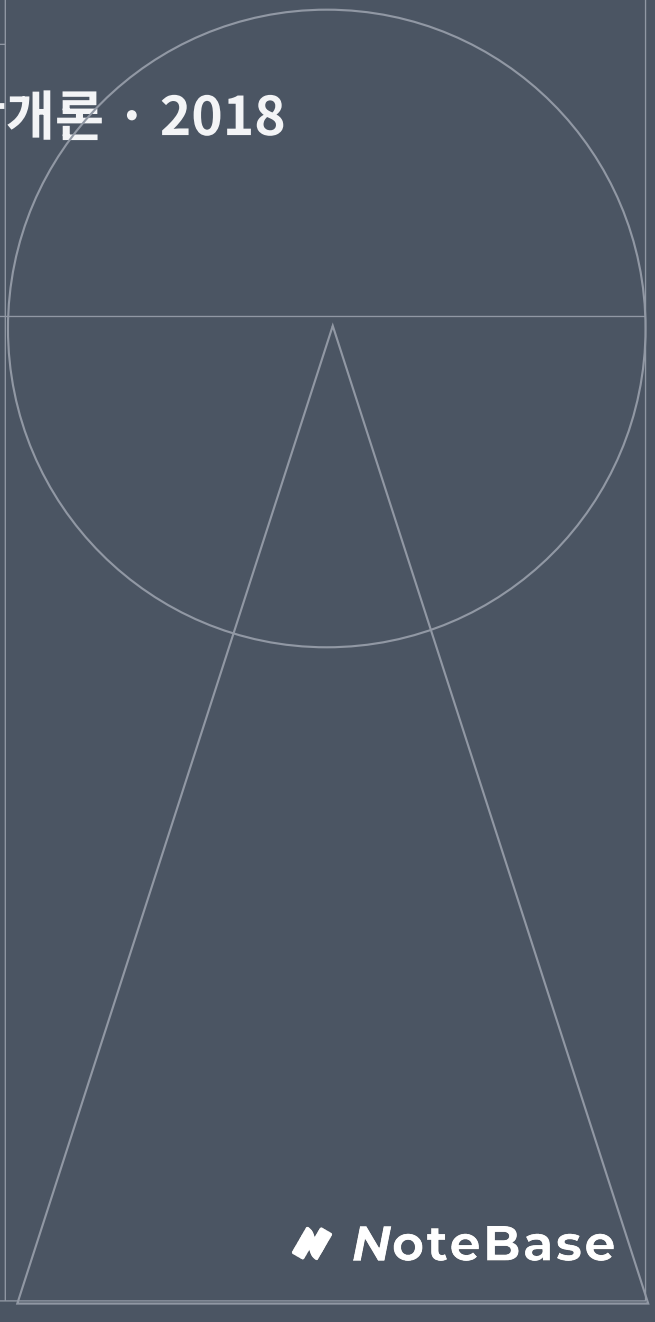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경호학개론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경호학개론 · 2018

공무원/국회직/9급 · 경호학개론 · 2018

1. **근접경호임무 수행 중 우발상황 발생 시 경호원의 대응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호원이 체위를 확장하여 경호대상자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

 ② 공범 또는 2차 공격을 차단하고 안전을 위하여 경호대상자를 신속하게 대피시킨다.

 ③ 위해기도를 최초로 인지한 경호원이 육성으로 경고한다.

 ④ 인적방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중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호대상자를 대피시킨다.

 ⑤ 경호대상자의 대피는 경호대상자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경호원이 수행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근접경호 중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고·방호·대피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특히 경호대상자의 대피 장소로 적절한 곳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발상황 대응은 위험을 최초로 인지한 경호원이 경고하고, 경호대형을 확장하여 공격을 방호하며, 공범이나 2차 공격을 차단하는 가운데 경호대상자를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활동이다. 대피 장소는 위험원과 군중으로부터 벗어나 방호와 이동이 쉬운 안전지역이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경호대형을 확장하면 경호대상자와 공격자 사이의 방호 범위를 넓혀 공격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이다.
② O — 최초 공격 뒤에는 공범이나 2차 공격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경호대상자를 신속히 대피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③ O — 위험기도를 가장 먼저 인지한 경호원이 즉시 육성으로 경고하면 다른 경호원들이 상황을 공유하고 방호·대피 행동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인적방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중이 밀집한 지역으로'이다. 군중 밀집 지역은 추가 피해와 혼란을 키우고 대피 동선을 방해하므로, 실제로는 군중과 위험원에서 벗어나 방호와 이동이 쉬운 안전지역으로 경호대상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⑤ O — 경호대상자와 가장 가까운 경호원은 즉시 신체적으로 밀착하여 보호하면서 신속히 대피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대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④는 군중을 방패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군중 밀집 지역은 안전지역이 아니다. 우발상황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추가 피해, 공격자의 은폐, 이동 지연 가능성이 커지므로 군중 속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안전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발상황 대응 선지는 '위험의 조기 전파, 공격 차단, 경호대상자 방호, 안전지역으로의 신속한 대피'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군중 밀집 지역처럼 혼란과 추가 피해를 키우는 장소로의 이동은 부적절한 조치로 본다.

암기 포인트

최초 인지자는 경고, 근접 경호원은 방호·대피, 대피 목적지는 군중이 아닌 안전지역이다.

NoteBase

2. 경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경호는 호위와 경비를 구분하여 새로운 경호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② 형식적 의미는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③ 실질적 의미는 경호의 본질적·이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다.

④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⑤ 실질적 의미는 경호대상자를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활동이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경호의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그리고 법률상 경호의 정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경호를 담당 기관을 기준으로 파악하는지, 활동의 본질과 내용 및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파악하는지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현실의 경호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정립한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담당 기관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경호의 본질·이론·보호 기능을 기준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핵심 구분

형식적 의미는 '어떤 현실적 경호기관이 수행하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실질적 의미는 '활동의 본질과 목적이 경호에 해당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 법이 경호와 경비를 구분하여 별개의 새로운 경호 개념을 정의한다고 볼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법률상 경호의 정의에는 신체 위해의 방지·제거뿐 아니라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방비도 함께 포함된다. 틀린 표현은 '경호와 경비를 구분하여 새로운 경호개념으로 정의'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신체 위해의 방지·제거와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방비 등을 포괄하는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한다'이다.
② O — 형식적 의미는 현실에 존재하는 경호기관과 그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정립한 개념이다.
③ O — 실질적 의미는 특정 기관의 형식이 아니라 경호의 본질과 이론적 성격을 중심으로 이해한 개념이다.
④ O —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체 위해의 방지·제거,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방비 등 모든 안전 활동이라는 설명은 법률상 경호의 정의와 부합한다.
⑤ O —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담당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경호 대상자를 여러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경호와 경비를 구분'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법률상 정의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제거와 지역에 대한 경계·순찰·방비를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경호 개념 안에 함께 포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관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형식적 의미, 활동의 본질·목적·기능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실질적 의미로 판단한다. 법률상 정의를 묻는 경우에는 신체 위해의 방지·제거와 지역의 경계·순찰·방비가 모두 포괄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형식적 의미는 기관 기준, 실질적 의미는 본질·목적 기준이며, 법률상 경호는 신체 보호와 지역 방비를 함께 포괄한다.

NoteBase

3. 경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ㄱ)~(ㅁ)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ㄱ), (ㄴ), (ㄷ), (ㄹ), (ㅁ)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ㅁ)
①	질서유지	긴급체포	검문·검색	검측활동	사전 출입교육
②	질서유지	검측활동	신원조회	보호조치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③	질서유지	교통관리	출입통제	검문·검색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④	출입통제	교통관리	검측활동	신원조회	사전 출입교육
⑤	출입통제	검측활동	검문·검색	보호조치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위해 방지 안전 활동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률에 열거된 활동과 경호 실무에서 쓰일 수 있는 다른 용어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경호구역 = 경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위해 방지 안전 활동 =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경호구역에서 하는 질서유지·통제·검색 등의 활동이다.

핵심 구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열거한 활동은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이다. 이 활동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긴급체포, 검측활동, 신원조회, 보호조치, 사전 출입교육은 이 조항에 열거된 다섯 활동의 명칭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긴급체포, 검측활동, 사전 출입교육은 제5조 제3항에 열거된 안전 활동이 아니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긴급체포·검측활동·사전 출입교육
올바른 표현: 교통관리·출입통제·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② X
검측활동, 신원조회, 보호조치는 이 조항의 열거 항목이 아니고, 필요한 교통관리·검문·검색·출입통제가 빠져 있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검측활동·신원조회·보호조치
올바른 표현: 교통관리·검문·검색·출입통제

③ O
질서유지, 교통관리, 출입통제, 검문·검색,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는 모두 제5조 제3항이 정한 위해 방지 안전 활동에 해당한다.

④ X
출입통제와 교통관리는 해당하지만, 검측활동, 신원조회, 사전 출입교육은 이 조항의 열거 항목이 아니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검측활동·신원조회·사전 출입교육
올바른 표현: 질서유지·검문·검색·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⑤ X
출입통제, 검문·검색,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는 해당하지만, 검측활동과 보호조치는 이 조항의 열거 항목이 아니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검측활동·보호조치
올바른 표현: 질서유지·교통관리

오답 포인트

경호 실무와 관련 있어 보이는 긴급체포, 검측활동, 신원조회, 보호조치, 사전 출입교육을 법률이 직접 열거한 항목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실제 경호업무 전반이 아니라 제5조 제3항에 적힌 다섯 활동의 명칭을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마다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긴급체포, 검측활동, 신원조회, 보호조치, 사전 출입교육이 섞여 있으면 제5조 제3항의 열거 조합이 아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경호구역의 다섯 안전 활동은 '질서-교통-검문·검색-출입통제-위험물 안전조치'이다.

NoteBase

4.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호조직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경호기관 구조의 정점으로부터 말단까지 상하계급 간의 일정한 관계로 인해서 책임과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

①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
②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
③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
④ 경호협력성의 원칙
⑤ 경호조직의 통합성과 계층성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경호조직의 여러 원칙 가운데 상하 계급 간 관계, 책임과 업무의 분담, 명령과 복종의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은 경호기관 구조의 정점부터 말단까지 상하 계급 간 관계를 일정하게 설정하고, 책임·업무분담과 명령·복종의 지위 및 역할 체계를 통일하는 원칙이다. 핵심 단서는 '정점부터 말단까지', '상하계급', '명령과 복종', '체계의 통일'이다.
경호지휘단일성은 지휘의 방향과 명령 계통을 하나로 모으는 데 초점이 있고, 경호협력성은 구성원이나 기관 사이의 상호 협조에 초점이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은 지휘권과 명령 계통을 단일하게 유지하는 원칙이다. 제시문은 단순히 지휘를 한곳에 모으는 것보다 정점에서 말단까지 상하관계와 역할 체계 전체를 통일하는 내용을 설명하므로, 올바른 표현은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이다.
② O —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은 상하 계급 간 관계를 바탕으로 책임과 업무를 나누고 명령·복종의 지위와 역할 체계를 통일하는 원칙이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③ X —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은 경호기관이 각각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로 작용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 제시문처럼 상층부터 말단까지 계급 관계와 명령·복종 체계를 통일하는 원칙은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이다.
④ X — '경호협력성의 원칙'은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나 기관이 서로 협조하는 데 초점이 있다. 제시문에는 상호 협조가 아니라 상하계급 관계와 명령·복종 체계의 통일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올바른 표현은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이다.
⑤ X — '경호조직의 통합성과 계층성'은 조직이 하나의 목표 아래 결합되고 상하 단계로 구성된다는 일반적 성격을 가리킨다. 제시문이 묻는 구체적인 경호조직 원칙의 명칭은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이다.

오답 포인트

'명령과 복종'만 보고 ① 지휘단일성을 고르거나, '상하계급'만 보고 ⑤ 통합성과 계층성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은 정점부터 말단까지 책임·업무분담·지위·역할의 체계가 모두 통일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② 경호체계통일성이 정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점부터 말단까지의 상하관계와 책임·업무·명령·복종 체계를 함께 묶어 설명하면 경호체계통일성으로 판단한다. 지휘권을 하나로 모으는 내용이면 지휘단일성, 기관 간 도움과 공조가 중심이면 협력성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정점에서 말단까지 상하관계와 역할 체계를 하나로 맞추는 원칙은 경호체계통일성이다.

NoteBase

5. 을(乙)호 경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
② 국무총리
③ 대법원장
④ 대통령후보자
⑤ 법무부장관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한 을호 경호대상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직위 자체로 을호 경호대상에 포함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을호 경호대상은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는 국내 주요 인사 가운데 경찰 경호 분류상 을호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핵심 구분

을호 경호대상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장관은 그 직위 자체만으로 을호 경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회의장은 을호 경호대상에 해당한다.

② O
국무총리는 을호 경호대상에 해당한다.

③ O
대법원장은 을호 경호대상에 해당한다.

④ O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경찰의 을호 경호대상에 해당한다.

⑤ X
법무부장관은 직위 자체만으로 을호 경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법무부장관은 을호 경호대상이다.
올바른 표현: 법무부장관은 을호 경호대상으로 열거된 직위가 아니며,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판단과 지정에 따라 경호대상이 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모두 행정부의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경호등급에 넣는 것이 함정이다. 을호 여부는 단순한 직급의 높이가 아니라 경호대상으로 정해진 직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을호 경호대상 문제에서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먼저 묶고, 개별 부처 장관은 직위만으로 이 묶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을호 핵심은 국회·대법원·헌재의 장, 국무총리, 대통령선거 후보자이다.

NoteBase

6. 「국회법」상 국회의 질서와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③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의 시간적 요건으로 '회기 중'이란 국회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 중 및 위원회가 개최되는 때만 포함하고,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가 개최되는 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의 장소적 요건으로 '국회 안'은 회의장뿐만 아니라,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의사당 건물이나 그 일부 또는 부지 전부를 가리킨다.

⑤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회의 질서유지권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경호권의 시간적·장소적 범위, 경호인력의 담당 구역, 경찰공무원 파견 절차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경호권은 회기 중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권한이다. 질서유지권은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제지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하는 권한이다.

핵심 구분

국회법 제143조에 따라 의장은 회기 중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여기서 시간적 범위는 정기회·임시회의 회기 중에 한정하여 실제 회의가 열리는 순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폐회 중 상임위원회 정례회의가 개최되는 때도 포함하여 본다. 장소적 범위인 '국회 안'은 회의장뿐 아니라 국회의사당 건물과 그 부지까지 포함한다.
국회법 제144조에 따라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을,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44조 제2항의 내용이다.

② O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다.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므로 옳다.

③ X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가 개최되는 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폐회 중이라도 상임위원회 정례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는 국회의 질서와 회의의 안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호권의 시간적 범위에 포함하여 본다.
틀린 표현: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가 개최되는 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올바른 표현: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가 개최되는 때도 포함한다.

④ O
경호권의 장소적 범위인 '국회 안'은 회의장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회의사당 건물과 그 일부 또는 부지 전부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회 경내의 회의장 밖 공간에서도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O
국회법 제14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이는 회의의 질서유지권에 관한 내용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국회법 제143조의 '회기 중'을 지나치게 좁게 이해하여 폐회 중 상임위원회 정례회의까지 배제한 데 있다. 또한 ⑤는 경호권 자체가 아니라 회의의 질서유지권에 관한 규정이지만, 국회의 질서와 경호에 관한 설명으로는 옳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시간은 회기 중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때를 확인하고, 장소는 회의장에 한정되지 않는 국회 경내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 경찰공무원은 건물 밖이라는 담당 구역을 구별하고, 경찰공무원 파견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일정한 기간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경호권은 의장이 국회 경내에서 행사하고, 경위는 건물 안·경찰공무원은 건물 밖을 맡는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도 빠뜨리지 않는다.

NoteBase

7. 다음은 현대사회의 경호기관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기관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 1949년 2월 23일에는 (　　)이/가 신설되는 등의 행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최초로 '경호'라는 용어의 사용과 경호업무의 체제가 정비되었다.

① 국가재건최고회의 경호대
② 경무대경찰서
③ 중앙정보부 경호대
④ 대통령경호실
⑤ 경찰청 경호국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현대 한국 경호기관의 변천 과정에서 1949년 2월 23일 신설된 기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무대경찰서는 1949년 2월 23일 창덕궁경찰서가 폐지된 뒤 신설되어 경무대의 경호·경비 업무를 맡은 경찰기관이다. 같은 해 내무부 훈령으로 경호규정이 제정되면서 '경호'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고 경호업무 체계가 정비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는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경호하기 위해 편성된 조직이므로 1949년의 기관이 아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경호대'가 아니라 빈칸에는 '경무대경찰서'가 들어간다.
② O — 경무대경찰서는 1949년 2월 23일 창덕궁경찰서 폐지 후 신설되었고, 경무대의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③ X — 중앙정보부 경호대는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가 중앙정보부에 예속되면서 사용된 명칭이므로 1949년과 맞지 않는다.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아니라 '경무대경찰서'가 맞다.
④ X —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실법 제정에 따라 1963년 출범한 조직이므로 1949년의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경호실'이 아니라 '경무대경찰서'가 맞다.
⑤ X — 경찰청 경호국은 1949년 2월 23일 신설된 해당 경호기관의 명칭이 아니다. 이 날짜에 신설된 기관의 정확한 명칭은 '경무대경찰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선지들이 모두 대통령 또는 국가요인 경호와 관련된 명칭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1949년 2월 23일'이라는 연도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와 중앙정보부 경호대는 1961년, 대통령경호실은 1963년의 조직이므로 시대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호기관 변천 문제에서는 기관명보다 먼저 연도를 확인한다. 1949년은 경무대경찰서, 1961년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와 중앙정보부 경호대, 1963년은 대통령경호실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1949 경무대경찰서 → 1961 의장 경호대·중앙정보부 경호대 → 1963 대통령경호실이다.

NoteBase

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국가 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②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③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⑤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제의하는 사항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과 대테러센터의 수행업무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대테러센터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등 대테러활동의 실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핵심 구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제3항은 국가 정책의 수립·평가, 중요 중장기 대책의 추진사항,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사항을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정한다. 반면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테러센터의 수행업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수행업무이다.
틀린 표현: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라는 부분
올바른 표현: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는 대테러센터가 수행한다.

② O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③ O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④ O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⑤ O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라는 문구를 위원회 자체의 권한으로 오인하기 쉽다. 법은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대책위원회와 회의·운영의 실무를 처리하는 대테러센터를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 수립·평가, 중장기 대책, 기관 간 역할 조정처럼 중요한 정책 판단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본다.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실무 조정, 지침 작성·배포처럼 집행·지원 성격의 업무는 대테러센터의 업무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대책위원회는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대테러센터는 회의·운영 사무를 처리한다.

NoteBase

9. 다음 중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직권면직 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가. 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 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 다.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 라.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 마.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
> 바.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직권면직 사유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제시된 가~바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면직 사유에 각각 해당하는지를 판별하여 그 개수를 세는 것이다.

용어 풀이

직권면직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용권자가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 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이다. 징계로서의 파면·해임과 달리, 이 문항의 사유는 직무수행 곤란이나 조직·정원 변화 등 법정 사유를 중심으로 한다.

NoteBase

핵심 구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한다. 가는 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나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부적합한 경우, 다는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으로 폐직·과원이 된 경우이다. 라는 휴직 종료·사유 소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마는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바는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 취소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따라서 가~바 여섯 항목이 모두 직권면직 사유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해당 사유는 2개가 아니라 가~바 모두인 6개이다. 틀린 표현: 2개. 올바른 표현: 6개이다.
② X — 해당 사유는 3개가 아니라 6개이다. 틀린 표현: 3개. 올바른 표현: 6개이다.
③ X — 해당 사유는 4개가 아니라 6개이다. 틀린 표현: 4개. 올바른 표현: 6개이다.
④ X — 해당 사유는 5개가 아니라 6개이다. 틀린 표현: 5개. 올바른 표현: 6개이다.
⑤ O — 가~바가 법률에 열거된 여섯 직권면직 사유와 각각 일치하므로 6개가 맞다.

오답 포인트

마의 대기명령 후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바의 자격증 효력 상실·면허 취소를 징계사유로만 생각하여 제외하기 쉽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법률이 별도의 직권면직 사유로 직접 규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개수를 묻는 문항에서는 각 항목을 신체·정신상 장애, 능력·근무태도 부적합, 폐직·과원, 휴직 후 미복귀·직무수행 불가, 대기명령 후 개선 기대 곤란, 필수 자격·면허 상실의 여섯 범주와 차례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경호처 직원 직권면직 6가지: 장해·부적합·폐직과원·휴직후불복귀·대기후개선곤란·자격면허상실이다.

NoteBase

10. 국회 행사장에서 검색장비 설치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장소는 피해서 설치한다.
② 조립식 제품의 검측장비에 힘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는다.
③ 모든 기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파악, 점검하도록 한다.
④ 금속탐지기를 2대 이상 설치 운용 시에는 최소한 1m 이상의 이격이 있어야 한다.
⑤ 전압 변동이 심한 지역을 피해서 설치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할 때 전자기적 간섭과 물리적 충격을 막고 정상 작동 상태를 확보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검색장비 설치의 핵심은 간섭 요인을 피하고 장비를 안정적으로 취급하며, 운용 전에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여러 대의 금속탐지기를 함께 운용할 때는 장비 사이의 상호 간섭을 막기 위한 충분한 이격거리가 필요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고압 전류가 흐르는 장소는 전자기적 간섭으로 검색장비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서 설치하는 것이 옳다.
② O — 조립식 검색장비에 힘이나 충격을 가하면 정렬 상태가 틀어지거나 내부 부품이 손상되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O — 검색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모든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최소한 1*m* 이상의 이격'이다. 금속탐지기를 2대 이상 운용할 때는 상호 간섭에 따른 오작동을 막기 위해 장비 사이를 최소 3*m* 이상 이격해야 한다.
⑤ O — 전압 변동이 심한 곳은 장비의 작동 불안정이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서 설치하는 것이 옳다.

오답 포인트

④는 '이격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거리를 1*m*로 축소해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사람의 통과 간격과 여러 금속탐지기 사이의 설치 간격을 혼동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검색장비 설치 선지는 전기적 안정성, 물리적 보호, 사전 작동 점검, 장비 간 상호 간섭 방지로 나누어 판단한다. 수치가 제시되면 금속탐지기 여러 대의 설치 간격은 최소 3*m*인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고압·전압 변동은 피하고, 충격은 금지하며, 작동은 점검하고, 금속탐지기끼리는 3m 이상 띄운다.

11. 경호임무 수행 중 근접경호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들의 손, 표정, 행동을 전체적으로 경계한다.
② 육감에 의지하지 말고 직접 보고 들은 것 등 오감이 인지한 사실에 입각하여 집중해서 관찰한다.
③ 행사 상황이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착용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④ 사주경계의 대상은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를 망라한다.
⑤ 경계시점을 중첩되게 함으로써 위해 시도를 최소화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근접경호에서 경계할 대상과 관찰에 활용하는 감각, 경계시점 운용 원칙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접경호의 경계는 경호대상자 가까이에서 위해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주변 사람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활동이다. 사람의 손·표정·행동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를 파악하며, 경계시점을 중첩하여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람의 손, 표정, 행동은 위해 의도나 수상한 움직임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경계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집중해서 관찰한다'이다. 한 지점이나 한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방향에서 발생하는 위해 징후를 놓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직접 보고 들은 사실 등 오감으로 얻은 정보를 활용하되, 시선을 한곳에 고정하지 않고 주변 전체를 폭넓게 관찰한다고 표현해야 한다.
③ O — 행사 상황이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과 수상한 행동은 위해 가능성을 판별하는 이상 징후이므로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④ O — 사주경계는 경호대상자 주변의 사람, 물건, 지형·장소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⑤ O — 여러 경호원의 경계시점을 서로 중첩하면 한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보완하므로 경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육감에 의지하지 않고 오감이 인지한 사실에 입각한다'는 타당한 앞부분으로 판단을 유도한 뒤, 끝에 '집중해서 관찰한다'를 붙인 함정이다. 근접경호의 경계는 특정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는 집중 관찰이 아니라 주변 전체를 폭넓게 살피는 관찰이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접경호의 경계 기법은 전체 관찰, 이상 징후의 중점 감시, 취약요소의 사주경계, 경계시점 중첩으로 정리한다. 선지의 앞부분이 맞더라도 '집중 관찰'처럼 전체 경계를 좁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끝까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한곳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를 보며, 시점을 겹쳐 사각을 줄인다.

NoteBase

12. 선발경호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장에 도착하여 우발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경호대상자가 위치한 실내의 도청과 같은 보안사항을 확인한다.

② 선발경호는 사전에 현지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및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③ 선발경호는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행경호팀을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라도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④ 우발상황의 발생으로 경호대상자의 대피상황이 발생하면 선발경호원은 자기담당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자기 구역의 특이사항을 경호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대규모 행사장에서는 경호대상자의 위협 수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현장에 사전배치하고, 위해 정보는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요청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선발경호의 사전 준비, 우발상황 대응, 정보 보안, 현장 이탈 금지, 관계기관 협조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발경호는 경호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위해 요소를 제거하며, 우발상황에 대비한 대응·대피 계획과 인원 배치·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활동이다. 이때 경호 관련 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하는 보안 원칙이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선발경호원은 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우발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경호대상자가 머무를 실내의 도청 가능성 등 보안 위해 요소를 확인한다.

② O — 현지 상황에 맞는 대응 및 대피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은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선발경호의 핵심 업무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수행경호팀을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라도'이다. 보안은 정보를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호 임무상 알 필요가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O — 대피상황이 발생하면 선발경호원은 임의로 담당구역을 이탈하지 않고, 경호지휘계통에 자기 구역의 특이사항을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한다.

⑤ O — 대규모 행사장에서는 경호대상자의 위험 수준에 맞는 규모의 인원을 사전 배치하고, 위해 정보 수집과 대응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앞부분 때문에 옳아 보이지만, 뒤의 '어느 누구에게라도'가 보안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행경호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현장 정보를 무제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발경호 관련 선지는 사전 현장점검·대응 및 대피 계획·담당구역 유지·지휘계통 보고·관계기관 협조에 해당하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정보 공유에 '누구에게나', '모든 정보'와 같은 무제한 표현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만 제공한다는 보안 원칙에 비추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선발경호는 먼저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며,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공유한다.

NoteBase

13. 경비의 분류 중 경계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치안경비는 경기대회, 기념행사 등 미조직 군중의 혼란 또는 혼란에 의하여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활동이다.

② 혼잡경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비 사태에 대하여 예방, 경계, 진압, 간첩, 다중범죄, 비상경계, 경호경비 등의 경비부대 활동이다.

③ 중요시설경비는 총포, 도검, 폭발물, 기타 총기류에 의한 인질, 살상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범죄 등의 사태로부터 발생할 위해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활동이다.

④ 특수경비는 시설의 재산, 문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간첩, 태업, 절도 등의 침해행위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활동이다.

⑤ 재해경비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상 피해가 야기될 경우 이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활동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경비의 분류별 대상과 임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혼잡경비·치안경비·중요시설경비·특수경비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제시된 점을 판별해야 한다.

핵심 개념

혼잡경비는 경기대회·기념행사 등에서 미조직 군중의 혼란과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를 예방·경계·진압하는 활동이다.
치안경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비사태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간첩·다중범죄·비상경계·경호경비 등을 포함한다.
중요시설경비는 시설·재산·문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고 간첩·태업·절도 등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이다.
특수경비는 총포·도검·폭발물 등에 의한 인질·살상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범죄에 대응하는 활동이다.
재해경비는 천재지변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될 때 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활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경기대회·기념행사 등 미조직 군중의 혼란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응한다는 설명은 치안경비가 아니라 혼잡경비이다. 틀린 표현인 '치안경비'는 '혼잡경비'로 고쳐야 한다.
② X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비사태에 대응하며 간첩·다중범죄·비상경계·경호경비 등을 포괄한다는 설명은 혼잡경비가 아니라 치안경비이다. 틀린 표현인 '혼잡경비'는 '치안경비'로 고쳐야 한다.
③ X — 총포·도검·폭발물 등에 의한 인질·살상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범죄에 대응한다는 설명은 중요시설경비가 아니라 특수경비이다. 틀린 표현인 '중요시설경비'는 '특수경비'로 고쳐야 한다.
④ X — 시설의 재산·문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고 간첩·태업·절도 등의 침해를 예방한다는 설명은 특수경비가 아니라 중요시설경비이다. 틀린 표현인 '특수경비'는 '중요시설경비'로 고쳐야 한다.
⑤ O — 천재지변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활동은 재해경비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 ③과 ④는 각각 개념명을 맞바꾼 선지이다. 행사 군중은 혼잡경비, 공공질서 교란 사태는 치안경비, 시설·재산·문서 보호는 중요시설경비, 총포·폭발물 등에 의한 인질·살상 중요범죄는 특수경비로 구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비대상의 핵심어를 먼저 찾는다. 행사·군중이면 혼잡경비, 공공의 안녕과 질서이면 치안경비, 시설·재산·문서이면 중요시설경비, 총포·폭발물과 인질·살상이면 특수경비, 천재지변이면 재해경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행사 군중은 혼잡, 공공질서는 치안, 시설 보호는 중요시설, 인질·살상 중요범죄는 특수, 천재지변은 재해이다.

NoteBase

14. 다음 중 경호의 일반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호 원칙

② 경호원의 경호가 경호대상자의 편의에 부합해야 하고 경호대상자의 공적, 사적기능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경호 원칙

③ 경호대상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머리를 숙이게 한다든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위험을 모면하도록 하는 경호 원칙

④ 경호대상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경호원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호 원칙

⑤ 경호대상자가 위치한 집무실이나 행사장으로부터 내부, 내곽, 외곽으로 구분하고, 경호 행동반경을 거리개념으로 전개한 경호 원칙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경호의 일반원칙과 특별원칙을 구분하고, 각 설명이 어느 원칙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호의 일반원칙은 3중경호의 원칙, 두뇌경호의 원칙, 방어경호의 원칙, 은밀경호의 원칙으로 구분된다.
경호의 특별원칙에는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 있다.
일반원칙은 경호활동의 전개 방식에 관한 원리이고, 특별원칙은 경호원이 임무 수행 중 지켜야 할 책임과 통제의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완력보다 판단과 사전 대비를 중시하는 두뇌경호의 원칙이다.
② O — 경호가 경호대상자의 편의에 부합하고 공적·사적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경호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수행하는 은밀경호의 원칙에 해당한다.
③ O —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경호대상자의 머리를 숙이게 하고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여 위험을 모면하게 하는 것은 공격보다 방호와 대피를 우선하는 방어경호의 원칙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경호원의 희생을 감수하여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일반원칙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는 자기희생의 원칙으로서 경호의 특별원칙에 해당한다. 일반원칙의 방어경호로 고치면 '위기 시 경호대상자를 방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위험을 모면하게 한다'가 된다.
⑤ O — 경호대상자가 있는 장소를 내부·내곽·외곽으로 구분하고 거리별로 경호 행동반경을 설정하는 것은 3중경호, 즉 중첩경호의 원칙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내용은 경호 실무상 타당해 보이지만, 이 문제는 내용의 타당성만이 아니라 원칙의 분류를 묻는다.
‘희생’이라는 말이 나오면 방어경호가 아니라 특별원칙인 자기희생의 원칙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거리별 구역 설정은 3중경호, 계획과 예방은 두뇌경호, 방호와 대피는 방어경호, 편의·기능 보장과 드러나지 않는 수행은 은밀경호로 연결한다. 희생·담당구역 책임·통제된 접근·목표물 보존은 특별원칙으로 따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일반원칙은 ‘3·두·방·은’, 특별원칙은 ‘희·책·접·목’이다.

NoteBase

15. 뉴테러리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목표나 대상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 요구조건이나 테러리즘의 실시목적이 구체적이다.
③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피해규모가 크다.
④ 9.11테러사건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테러리즘이다.
⑤ 기존의 테러리즘보다 지능화되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뉴테러리즘이 전통적 테러리즘과 구별되는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성·대규모 피해·예측 곤란성과 함께 요구조건이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뉴테러리즘은 9·11 테러와 같이 조직과 수법이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불특정 다수에게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는 현대적 테러 양상이다.
전통적 테러리즘은 특정한 정치적 요구나 협상 목적을 비교적 분명히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뉴테러리즘은 요구조건이나 실시 목적이 불명확하고 공격 자체가 대량 살상과 공포 확산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뉴테러리즘은 특정한 대상만을 제한적으로 공격하기보다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요구조건이나 테러리즘의 실시목적이 구체적이다'이다. 실제로는 요구조건이나 실시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
③ O — 공격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고 대량 살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④ O — 9·11 테러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뉴테러리즘의 대표적 사례로 설명된다.
⑤ O — 뉴테러리즘은 조직·정보·기술과 공격 수법이 고도화되어 기존 테러리즘보다 지능화되고 공격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오답 포인트

'구체적이다'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테러 수법과 계획이 치밀하고 지능화되었다는 특징을 요구조건이나 목적까지 구체적이라는 뜻으로 혼동하면 안 된다. 뉴테러리즘은 수법은 고도화되지만 요구와 목적은 오히려 불명확할 수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뉴테러리즘의 특징은 '대상은 불특정, 시공간은 예측 곤란, 피해는 대규모, 수법은 지능화, 요구·목적은 불명확'이라는 대비축으로 판단한다. 선지에 요구조건이나 목적이 구체적·명확하다고 나오면 전통적 테러리즘의 성격과 뒤바뀐 표현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뉴테러리즘은 '불특정·불명확·대규모·지능화'로 정리한다.

NoteBase

16. 특정한 상황에서의 근접경호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호대상자가 문을 통과하기 전에 좌측방 경호원이 먼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때는 내부, 나올 때는 외부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한 후 경호대상자를 통과시키도록 한다.

②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가능한 한 일반인과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선정해 놓는 것이 좋다.

③ 문을 통과할 때는 항상 전방경호원이 문의 상태를 파악하고, 미는 문일 경우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잡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회전문을 사용할 때에는 신속히 경호대상자를 먼저 탑승시키고, 경호원이 1칸의 간격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도보대형을 형성한 후 이동하도록 한다.

⑤ 경호대상자가 내부에서 머물고 있을 때, 동석 이외의 경호원은 위해자가 내부로 침입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출입문에 대한 통제 근무와 외부상황에 대한 경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출입문·엘리베이터를 통과할 때 경호대상자를 위험에 먼저 노출하지 않고 안전을 확인하며 보호대형을 유지하는 근접경호요령을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선발 경호원이 출입구와 이동수단의 상태 및 안팎의 위험요소를 먼저 확인한다.
2. 경호대상자가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문을 확보하고 주변을 경계한다.
3. 통과 뒤 경호대형을 신속히 다시 형성하여 이동한다.

왜 이 순서인가: 경호대상자가 통과하기 전에 이동 통로의 안전이 먼저 확보되어야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회전문은 대형 유지와 즉각 대응이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문 통과 전 좌측방 경호원이 먼저 통과하여 진입 때는 내부, 이탈 때는 외부의 안전을 확인한 뒤 경호대상자를 통과시키는 것은 선행 안전확보 원칙에 맞는다.
② O — 엘리베이터는 일반인과 혼승하면 접촉과 돌발상황의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O — 전방경호원은 문 상태와 문 너머의 상황을 먼저 확인한다. 미는 문은 먼저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잡아 통로를 확보하므로 경호대상자의 안전한 통과를 돕는다.
④ X — 틀린 표현은 '회전문을 사용하여 경호대상자를 먼저 탑승시키고 1칸 간격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이다. 회전문은 경호대형이 분리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출입문 등 통제가 쉬운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가피하게 이용하더라도 경호대상자를 먼저 위험구역에 진입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⑤ O — 경호대상자가 내부에 머무를 때 동석하지 않는 경호원은 외부 출입문을 통제하고 외부상황을 경계하여 위해자의 침입을 차단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신속히', '1칸의 간격', '정상적인 도보대형' 같은 그럴듯한 표현으로 회전문 이용 자체의 위험성을 가린다. 회전문 안에서는 인원이 칸별로 분리되어 정상적인 보호대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출입구 통과 문제는 '경호원이 먼저 안전 확인 → 문과 통로 확보 → 경호대상자 통과 → 보호대형 재형성'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경호대형을 분리하거나 경호대상자를 먼저 위험에 노출하는 절차는 부적절하다.

암기 포인트

문은 선확인·후통과, 회전문은 사용 지양, 잔류 시에는 외곽 통제이다.

NoteBase

17. 안전검측실시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제품은 분해하여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제거한다.
② 꽉 채워진 비품의 경우에는 전부 꺼내서 확인해야 한다.
③ 건물 내부와 외부는 위험물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각각 다른 요령으로 검측한다.
④ 가구의 문과 서랍은 열어보고 비밀공간이나 상단, 바닥 및 뒷부분을 점검한다.
⑤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했을 시 촉수검측을 실시한 후 조치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안전검측에서 장소와 물품의 특성에 맞는 점검 방법, 그리고 의심 물건 발견 시의 안전한 대응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전검측은 위해물의 은닉·설치 가능성이 있는 장소와 물품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이다. 일반 물품은 구조와 은닉 가능성을 고려해 확인하지만, 의심 물건은 현장 검측자가 임의로 만지거나 자체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통제한 뒤 전문적인 안전 조치로 연결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전자제품은 내부에 위해물을 숨길 수 있으므로 분해하여 확인하고, 현장에서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물품은 검측 현장에서 제거한다.
② O — 내용물이 가득 찬 비품은 내부에 위해물이 섞이거나 숨겨질 수 있으므로 내용물을 모두 꺼내 확인한다.
③ O — 건물 내부와 외부는 구조와 접근 조건, 위해물 설치 가능 지점이 서로 다르므로 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서로 다른 요령으로 검측한다.
④ O — 가구의 문과 서랍을 열고 비밀공간뿐 아니라 상단·바닥·뒤쪽까지 확인하는 것은 은닉 가능 지점을 빠짐없이 점검하는 방법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촉수검측을 실시한 후 조치한다'이다. 의심 물건은 현장 검측자가 접촉하여 확인해서는 안 되며, 즉시 보고하고 주변을 통제한 뒤 전문요원이 안전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의심스러우니 직접 만져 확인한다'는 표현이 적극적인 검측처럼 보이지만, 의심 물건에 대한 접촉은 폭발이나 작동 위험을 키운다. 검측 대상의 일반 물품을 확인하는 절차와 이미 발견된 의심 물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반 물품·공간은 분해, 개방, 반출 등으로 은닉 지점을 확인한다. 반면 의심 물건이 발견된 뒤에는 '접촉·이동·분해'가 아니라 '보고·통제·전문 조치'가 원칙인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일반 대상은 열고 확인하지만, 의심 물건은 건드리지 않고 보고·통제한다.

NoteBase

18. 다음에서 설명하는 암살의 동기로 옳은 것은?

> 적국의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승전으로 이끌 수 있거나 사회 혼란을 조성, 전쟁발발의 호기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하에 발생하는 국가지도자에 대한 암살

① 개인적 동기
② 이념적 동기
③ 적대적 동기
④ 심리적 동기
⑤ 경제적 동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암살의 동기를 행위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핵심은 적국 지도자를 제거하여 승전, 사회 혼란, 전쟁 도발과 같은 전략적 목적을 이루려는 데 있다.

핵심 개념

개인적 동기는 개인적 원한·복수 등 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동기이다.
이념적 동기는 정치·종교·사회적 신념이나 이념을 실현하려는 동기이다.
적대적 동기는 적대 세력의 지도자를 제거하여 전쟁·대립 상황에서 전략적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이다.
심리적 동기는 정신적 불안정, 과시욕 등 개인의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동기이다.
경제적 동기는 금전적 보상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개인적 동기'는 개인적 원한이나 복수 같은 사적 이유에 따른 암살이다. 제시문은 사적 감정이 아니라 국가적·군사적 전략을 말하므로, 올바르게는 '적대적 동기'이다.
② X — '이념적 동기'는 특정 정치·종교·사회 이념을 실현하려는 암살이다. 제시문에는 이념 실현이 아니라 적국 지도자 제거를 통한 전략적 이익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적대적 동기'이다.
③ O — 적국 지도자를 제거하여 승전을 이끌거나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전쟁 발발의 호기를 포착하려는 것은 적대 관계에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적대적 동기'에 해당한다.
④ X — '심리적 동기'는 정신적 불안정이나 과시욕 등 개인의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암살이다. 제시문은 개인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적국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원인으로 하므로, 올바르게는 '적대적 동기'이다.
⑤ X — '경제적 동기'는 금전적 보상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암살이다. 제시문에는 경제적 대가가 아니라 승전과 사회 혼란 같은 전략적 목적이 나타나므로, 올바르게는 '적대적 동기'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국가지도자에 대한 암살’이라는 대상만 보고 이념적 동기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동기는 대상이 아니라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제시문의 ‘적국’, ‘승전’, ‘사회 혼란’, ‘전쟁 발발’은 적대적 동기를 가리키는 결정적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암살의 대상보다 행위자가 얻으려는 결과를 먼저 확인한다. 사적 원한은 개인적, 신념 실현은 이념적, 적대 세력에 대한 전략적 이익은 적대적, 개인의 정신·심리 상태는 심리적,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동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원한은 개인적, 신념은 이념적, 적국에 대한 전략은 적대적, 마음의 문제는 심리적, 돈은 경제적 동기이다.

NoteBase

19. 행사장 출입과 관련한 비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호원에게는 예외로 발급할 수 있다.
② 행사초청인사와 참석자 모두에게 비표를 발급한다.
③ 비표와 초청자 명단을 확인하고 대조한다.
④ 제작된 비표는 경호부서에서 검인하고 원본은 안전하게 관리한다.
⑤ 허가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접근통제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행사장 비표관리에서 발급 대상, 명부 대조, 제작·보관 및 미허가자 통제의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표는 행사장 출입이 허가된 사람을 식별하고 출입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표지이다. 경호원을 포함한 행사 관계자에게 발급하고, 초청자 명단과 대조하며, 제작된 비표와 원본을 엄격히 관리하여 무단 출입을 막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경호원에게는 예외로 발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경호원도 행사장 출입 권한과 신분을 식별해야 하므로 비표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올바르게는 '경호원에게도 비표를 발급한다'이다.
② O — 행사조정인사와 참석자 모두 행사장 출입 자격을 식별해야 하므로 비표를 발급한다.
③ O — 비표와 초청자 명단을 확인·대조하면 비표 소지자와 실제 초청 대상자의 일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④ O — 제작된 비표는 경호부서에서 검인하여 진위를 관리하고, 복제·도용을 막기 위해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⑤ O —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비표에 따른 출입 권한이 없으므로 행사장 접근을 철저히 통제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경호원이 통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비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 비표는 참석자만을 위한 표지가 아니라 행사장 안에서 허가된 인원을 식별하는 수단이므로 경호원도 예외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표관리 선지는 '허가된 인원에게 발급하는가, 명부와 대조하는가, 제작물과 원본을 안전하게 관리하는가, 미허가자를 통제하는가'의 네 기준으로 판단한다. 허가된 행사 관계자를 예외적으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표현은 틀린 것으로 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비표관리는 전원 발급, 명부 대조, 검인·원본 보관, 미허가자 통제이다.

NoteBase

2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④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2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2명과 운전기사 2명을 둘 수 있다.

⑤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2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정한 전직대통령과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운전기사 정원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두 대상이 둘 수 있는 비서관 수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 =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뒤 법률에 따라 별도의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뜻한다.

핵심 구분

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운전기사는 1명이지만, 비서관은 전직대통령 3명과 배우자 1명으로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비서관 수가 모두 틀리다.
틀린 표현: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2명, 배우자는 비서관 2명을 둘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을 둘 수 있다. 운전기사는 각각 1명이다.

② O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는 법 제6조 제1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 X
배우자의 비서관 수를 2명으로 적은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배우자는 비서관 2명을 둘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④ X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운전기사 수를 각각 2명으로 적은 부분이 틀리고, 배우자의 비서관 수도 틀리다.
틀린 표현: 전직대통령은 운전기사 2명, 배우자는 비서관 2명과 운전기사 2명을 둘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X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수를 2명으로 적은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전직대통령은 운전기사 2명을 둘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배우자의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이라는 부분은 맞다.

오답 포인트

전직대통령과 서거 후 배우자의 비서관 수를 뒤섞거나, 모든 인원을 2명으로 바꾸어 놓은 표현이 함정이다. 특히 ③은 전직대통령의 정원은 맞지만 배우자의 비서관 수만 1명에서 2명으로 바꾸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운전기사는 두 경우 모두 1명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비서관이 전직대통령 3명·서거 후 배우자 1명인지 대조한다. 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선지만 옳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전직대통령은 3·1, 서거 후 배우자는 1·1이다. 앞 숫자는 비서관, 뒤 숫자는 운전기사이다.

NoteBase